

[재)포항테크노파크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2025년 제3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운영중인 「(재)포항테크노파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을 대상으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I

모집개요

□ 센터개요

- 센터명: (재)포항테크노파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1인 창조기업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자

* 관련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호

- 위치: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제1벤처동 1층
- 운영목적: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이 성공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
- 지원내용
 - 입주공간: 사무공간 내 사무집기(책상, 의자 등), 인터넷회선 무상 제공
 - 창업교육: 기술창업 및 기업경영 관련 교육 무상 제공
 - 네트워크: 투자유치(IR), 전시회, 워크숍 등 개최·참가 지원
 - 전문가 자문: 창업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 무상 지원
 - 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지적권 획득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선발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모집내용

- 신청자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7년 이내 (예비)창업자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으로 확인이 완료된 자
 - *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 : www.k-startup.go.kr/web/contents/webOCC_CK_P.do
 - **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및 확인절차는 [별첨1,2] 참조
- 7년 이내 (예비)창업자 : 공고일('25.7.17.)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
- 예비창업자: 입주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통사항: 주1회 이상 사무실 출근, 교육,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 간담회 및 성과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제공 가능한 기업

※ 입주대상자 구분

구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대상	1인 창조기업	
입주 비율	1인 창조기업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60% 이상	40% 이하

- 모집규모: 1인실 2개사, 2인실 1개사

구분	계약면적(㎡)	사무실 형태	입주가능시기 ('25.7월말 기준)
1인실(101호)	10.423	11개 기업 공동사용 (파티션 분리)	'25. 8월 (2개사)
2인실(108호)	21.812	5개 기업 공동사용 (파티션 분리)	'25. 8월 (1개사)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1년 * 단, 입주연장 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입주비용

구분	월 임대료(VAT별도)	임대보증금(VAT없음)	관리비
1인석(101호)	47,300원	150,000원	없음(센터 지원)
2인석(108호)	98,970원	300,000원	없음(센터 지원)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유해물질 배출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주위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II

신청 및 선발 절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모집기간: 2025. 7. 17.(목) ~ 7. 31.(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K-startup 정회원 등록·승인 후 입주신청서 제출

순번	신청절차	신청방법
1	k-startup 정회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tartup(창업지원포털)회원가입 후 정회원 등록 및 승인신청 (www.k-startup.go.kr)-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압축하여 업로드 (예비창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2	입주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입주신청서 제출 (www.ptp.or.kr)-알림마당-사업공고 ※예비창업자의 경우 별도 제출승인을 위해 담당자 연락 必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서식1),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대표자이력서(자유양식)

□ 선발방법

- 평가절차
 - 서류심사: 1인 창조기업 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발표평가: 입주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사업아이템, 입주 후 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1	창업자 역량 (30)	1-1.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20
		1-2.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10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2-1.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10
		2-2. 기술(제품)의 차별성	10
3	기술성 (20)	3-1.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10
		3-2. 기술구현의 현실성	10
4	시장성 (20)	4-1.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10
		4-2.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10
6	기타 (10)	5-1.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5
		5-2.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5
합계			100

○ 가점사항: 최대 3점

구분	가점내용		배점
1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지방청 주최 대회 및 행안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1점
3	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1점
4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우수성실경영자)	3점

Ⅲ 유의사항 및 기타안내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입주신청서 및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또는 입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발표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입주 시기 및 실내 자리 배정
- 심사결과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창업자 역량」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술성」 → 「시장성」 항목 배점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Ⅳ 문의처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재)포항테크노파크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총괄매니저 안치환	054-223-2244	clghks4223@ptp.or.kr

[별첨 1]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예기간)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시행령 별표 1) >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광 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 공사업	42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 및 주점업	5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1자리 코드), 중분류(2자리 코드), 소분류(3자리 코드), 세분류(4자리 코드),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

[별첨 2]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
- ◆ **상시근로자 확인** :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통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단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발급이 제한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
 - *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세대주,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 ◆ **유예기간** :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